

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생계 위기 가구 자립 지원금 안내

1 지급 대상 가구

긴급 소액자금 등의 특례 대출을 이용할 수 없는 가구

- 종합 지원자금의 재대출을 이미 완료한 가구/11월까지 완료한 가구 (재대출 기간에 철회한 결과, 11월까지 종료된 경우를 제외)
- 종합 지원자금의 재대출이 불승인된 가구
- 종합 지원자금의 재대출에 관한 상담을 했으나, 신청하지 않은 가구

상기 가구에 해당하며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

- 수입이 ①+②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않을 것 ※ 주거 확보 급부금의 요건과 동일
 - ① 시정촌민세의 균등률이 비과세인 수입액의 1/12
 - ② 생활 보호의 주택 부조 기준액
- 자산이 상기 ①의 6배 이하(단, 100만엔 이하)
※ 주거 확보 급부금의 요건과 동일
- 앞으로의 생계 자립을 위해 다음 중 하나의 활동을 할 것
 - 공공직업안정소에 구직 신청을 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구직 활동을 할 것
 - 취업을 통한 자립이 어렵고, 해당 급부가 종료된 후 생계 유지가 곤란할 것으로 예상될 때는 생활 보호 신청을 할 것

2 지급액·지급 기간

월 지급액 ※ 주거 확보 급부금과 병행 지급 가능

1인 가구	6만엔
2인 가구	8만엔
3인 이상 가구	10만엔

지급 기간: 3개월

▶ 지급 절차 및 문의처는 뒷면에 기재되어 있습니다.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3 지급을 위한 절차

거주지의 지자체에 신청해야 합니다.

신청서와 함께 다음 ①~⑥의 첨부 서류가 필요합니다. 신청 창구 및 방법은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※ 지급 기간에는 매월 구직 활동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또한, 구직 활동 상황에 따라 생활 보호에 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신청에 필요한 첨부 서류

① 본인 확인, 가구의 구성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	주민표 사본
② 수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	급여 명세서 등의 사본
③ 자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	가구의 구성원 전원의 통장 사본
④ 구직 활동 관련 서류	헬로워크 카드의 사본 또는 생활 보호를 신청 중일 경우에는 보호 신청서의 사본
⑤ 입금처(계좌)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	지급 계좌의 통장 사본
⑥ 재대출 종료, 불승인, 과거의 대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	차용서 또는 불승인 통지서의 사본, 대출금을 송금받은 통장의 사본 등. 자세한 내용은 특설 홈페이지에 게시된 '신청 안내서'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신청자

(1) 신청서 제출
창구에 직접 또는 우편

(2) 지정 계좌로 송금

거주 지역의
시청 및
구청 등

문의

후생노동성 콜센터 0120-46-8030

[접수 시간] 평일 9:00~17:00

특설 홈페이지

후생노동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생계 위기 가구 자립 지원금

신청 절차를 동영상으로 안내합니다.

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자세한 정보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URL: <https://corona-support.mhlw.go.jp/index.html>



! '신종 코로나 생계 위기 가구 자립 지원금'을 가장한 **"보이스 피싱 사기"** 또는 **"개인정보 사취"**에 주의하세요!

집이나 직장 등으로 도도부현·시구청촌 및 후생노동성(의 직원) 등을 사칭한 수상한 전화나 우편물을 받았을 경우에는 거주지의 시구청촌이나 가까운 경찰서(또는 경찰상담전화(#9110))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.